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9권 제3호

ISSN : 2287-2825(Print)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

정상우, 이민솔

To cite this article : 정상우, 이민솔 (2020)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 연구), 9:3, 1-24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

정상우** · 이민솔***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정책을 해외입양동포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대략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보다는 친생부모와 국가의 양육책임 회피 성격이 강하였다. 해외입양동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성장 이후 친생부모를 포함한 친족찾기와 한국과의 교류를 중요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친생부모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되어 해외입양동포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고 친족찾기 역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를 포함한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 현실과 규범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친족찾기 지원정책의 경과와 한계를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이른바 유전자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 설립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 외에 해외입양동포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친족찾기와 모국과의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입양동포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입양특례법, 인체유래물은행, 헤이그협약

* 이 연구는 재외동포재단의 의뢰로 연구 수행한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의 일부를 논문형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 주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

I. 서론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7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 보낸 나라로서 주목받아 왔다.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 전쟁고아가 입양대상 이었고, 1970년대 산업화시기 미혼모들의 자녀가 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입양아동들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으로 보낸 후 지금까지 별다른 지원정책 없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

1958년에서 2018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이른바 1세대 해외입양아동은 약 17만 명에 이른다. 1945년에서 1957년에 이르는 기간은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아동 숫자를 20만 명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다. 해외입양이 줄어든 최근에도 매년 약 400명이 해외로 보내진다. 1세대 해외입양동포의 생애를 고려하여 현재 2세·3세까지 포함하면 해외입양동포가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한우성, 2019).

이처럼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김유경, 2011; 노충래, 2012; 김재민, 2016). 무엇보다 지난 70년간 지속된 해외입양은 국가가 입양아동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법의 이념과 원리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 사실 과거의 입양정책은 이른바 비밀입양으로 입양인들이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알 수가 없었고, 그에 관한 정보는 정부와 입양 관련 담당자들만 독점하였다. 심지어 입양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보존하지도 않았다. 최근에 정부가 입양정책을 크게 손질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외입양동포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외국에 체류중이어서 국내법에 의한 보호나 인권보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해외입양동포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친족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다. 이들의 친족찾기는 성장과 인지발달 차원에서는 무척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전후해서는 입양인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입양부모의 지원을 받아 친족찾기, 이른바 뿌리찾기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나 일부 입양부모들은 이들의 친족찾기를 일탈로 보기도 하고, 친생부모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혹은 과거 입양정보의 불철저한 관리로 친족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입양동포들의 파양 경험이나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친족찾기의 중요성이 인식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정부는 해외입양동포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입양동포 친족찾기, 고국과의 교류, 국적회복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입양동포의 친족찾기는 그들의 정체성 확인을 넘어 입양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정책을 해외입양동포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 현실과 규범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친족찾기 지원정책의 경과와 한계를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대안으로서 이른바 유전자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 설립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 외에 해외입양동포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친족찾기와 모국과의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입양동포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이들의 정체성 확인과 세계시민성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와 인권 보장

1. 해외입양동포의 의의 및 현황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 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 제1항, 「입양특례법」 제11조 제1항)를 얻을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민법」 제772조 제1항).

아동의 입양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보편적인 제도라고 할 수는 없었고, 입양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로 가계 계승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입양제도로 인식되면서 보편화되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입양 제도는 가계 계승에서 탈피하여 아동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많기 때문이다. 현대 사

회에서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나아가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친부모에게 태어나서 거주하던 친생부모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양부모에 입양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입양은 국경을 넘기 때문에 일종의 국제이주의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국제입양에서는 아동을 보내는 국가인 ‘출신국’과 아동을 받아들이는 국가인 ‘수령국’으로 구별된다.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으로 입양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국제입양은 아동이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국가로 사실상 강제로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이주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국제입양은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1970 - 1990년대에 걸쳐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시작되어 1970 - 1980년대에 확대되었다(이경은, 2017). 다만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입양을 축소하는 분위기와 국내입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잡음에 따라 점차 축소되었다.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 아동 수가 해외입양 아동 수를 앞섰고, 해외입양 아동 수는 2011년 이후부터는 1천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2015년과 2016년에는 300명대를 기록하였다(소라미, 2018).¹⁾

〈표 1〉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 명)

구분	국내	국외	계
2008년 이전	71,633(30.2%)	161,558(69.8%)	233,191
2009	1,314(53.9%)	1,125(46.1%)	2,439
2010	1,462(59.1%)	1,013(40.9%)	2,475
2011	1,548(62.8%)	916(37.2%)	2,464
2012	1,125(59.8%)	755(40.2%)	1,880
2013	686(74.4%)	236(25.6%)	922
2014	637(54.4%)	535(45.6%)	1,172
2015	683(64.6%)	374(35.4%)	1,057
2016	546(62.0%)	334(38.0%)	880
2017	465(53.9%)	398(46.1%)	863
2018	378(55.5%)	303(44.5%)	681
계	80,477(32.5%)	167,547(67.5%)	248,024

출처: 보건복지부(2018), 입양 통계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입양국가는 미국이 62%를 차지한다.

2.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의 필요성

1) 해외입양동포의 정체성 확인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입양단체와 학계에서 친족찾기(이른바 ‘뿌리찾기’)에 대한 평가가 다소 소극적이었다.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기나 촉진기에는 비밀입양이 원칙적 모델이었기 때문에, 해외입양동포들의 친족찾기는 심지어 일탈적 행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유혜량, 2015). 해외입양동포들은 성장과정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되고 이방인 또는 경계인으로 살게 되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입양 사실을 회피하거나 친생부모를 찾는 뿌리찾기에 나서는 등 혼란과 안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성장기를 거쳐 독립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친족찾기에 대한 염원은 잠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도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200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입양동포들이 친족찾기를 시도하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들이 친족찾기를 하는 양상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기 시작하였다(유혜량, 2015). 친족찾기는 무엇보다 해외입양동포들의 심리 상태와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미선(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로 입양된 한국 성인 입양인들은 친부모 또는 가족과 연락을 했거나 상봉했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히며 친족찾기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혜연(2011) 역시 해외입양동포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인터뷰한 결과 입양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정체성 형성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며 또 어떤 정체성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에 해당한다.

해외입양동포가 친족찾기에 나서거나 또는 그 전단계로서 모국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류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사실 해외입양동포는 모국과 본국에서 모두 버림받았다는 인식을 하기 쉽고, 어느 나라에도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해외입양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소속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류지원을 한다면, 초국가적 시민으로서 다중정체성을 갖고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모국에 대한 이해, 친족찾기의 경험 등으로 양국 모두에 대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유혜

량, 2015).

2) 해외입양동포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아동인권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점을 여러 인권협약에서 직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우선 1948년 발효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15조). 그리고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라고 선언한다(제25조 제2항).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부모에 대해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가 금지되고 다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부모와의 분리 절차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가 있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한 출신국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입양이 고려된다. 그리고 국제입양 아동에 대하여 국내입양과 대등한 보호와 기준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입양 시 양육지정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은 금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에 관해서 직접적으로는 부모가, 간접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해외입양아동의 친족찾기에 대한 권리는 국내적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입양동포는 국적이 외국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것인지 별도로 논의해야 하지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성질이 국민의 권리가 아닌 사람의 권리인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헌법적 근거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을 알 권리 또는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판례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비록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더라도 법률상 권리 또는 인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며, 자신의 혈통에 입각한 친자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한 자율영역 보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夫)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다.²⁾ 이처럼 친자관계의 형성을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가족)를 알 권리는 우리 헌법상 알 권리에서 도출할 수 있다. 알 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며,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양인과 그 가족이 입양기록에 접근할 권리, 나아가 가족을 알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국가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친자관계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夫)에게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³⁾ 이에 따르면 과거 국가가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해외입양을 촉진시킴으로써 이제 진실한 혈연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해외입양동포에게 국가가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입양 발생 원인으로서는 국가책임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입양 역사에 있어 국가가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해외입양을 사실상 방조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수립 이후 초기부터 나타났는데, 한국전쟁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즉, 한국전쟁의 결과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동에 대한

2)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3)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헌재 2015.03.26. 2012헌바357.

보육과 교육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면서 전쟁고아의 문제를 입양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당시에는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거의 없었지만, 외국의 원조기관들을 통해 입양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순혈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조가은, 2019).

해외입양은 197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산업화 시기 입양은 주로 미혼모의 아이가 대상이 되었다. 김재민(2016)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는 지속적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미혼모의 어머니 역할을 박탈하고 자녀를 해외로 송출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국가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아동의 복지 문제는 공론화되기 어려웠다.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해외입양을 축소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잠시 있었으나, 이민확대와 민간외교 등의 영향으로 해외입양은 지속되었다(정기원·김만지, 1993). 문제는 이러한 입양의 역사에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조했거나 심지어는 해외입양을 사실상 조장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들어선 후에야 해외입양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내입양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은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해외입양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갖는 감수성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나라는 국제입양과 관련, 96개국에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고자 2013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까지 했지만, 국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정식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의 어려움

1)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해외입양동포가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이 쉽지는 않다. 우선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상 특히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이전의 입양 기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실한 해외입양을 사실상 방조한 나머지 입양기록을 철저하게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양이 아동 복지를 우선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의 부양의무를 회피한 탓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해외입양의 특성상 친생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외입양한 사실을 드러내기 꺼려한다.

물론 친생부모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생활의 보호 또는 익명성의 보장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우선 익명의 출산이 출산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태아 또는 출생하는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한다.

부모 특히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모 또는 친생부모는 출산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부모의 사생활 보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도 관련이 있다. 해외입양동포가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친생부모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원하지 않게 알려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때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약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2011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친생부모와 해외입양동포의 기본권 충돌 해결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입양동포(아동)와 그 친생부모는 각각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경우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해외입양에 있어 친생부모는 익명성을 원할 수 있고 반대로 자녀는 친생부모 또는 혈통을 찾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친생부모의 익명성 또는 사생활의 자유와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가 충돌한다. 두 권리가 충돌할 때 헌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두 기본권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면,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 즉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모의 익명성 보장(사생활 보호)이라는 대립하는 법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4)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등; 헌재 2017. 7. 27. 2015헌마109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해외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 첫째,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가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간접적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엄주희, 2016).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적 요청이자 아동의 기본적 인권이 된다(김상원·김희진, 2019). 아동의 양육 책임은 부모에게만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둘째, 1970년대 우리나라는 국가의 아동에 대한 양육책임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해외입양을 강요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과거 현실적으로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은 친생부모가 비혼모이거나 실종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비혼모이더라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절차나 보호를 회피하고 사실상 입양을 강제했던 것이다(안소영, 2015). 국가는 영아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부모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직접 급여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 셋째,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는 인격권에 근거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친생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출산 당시 이미 어느 정도 보호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와 양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익명출산이나 비밀출산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현재의 시점에서 친생부모의 사생활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양자를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양자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실현 가능성은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⁵⁾ 이때 입양신고제가 입양허가제로 변경되었고, 2012년에 개정된 민법(법률 제11300호, 2012.2.10. 시행일 2013.7.1.)도 법원의 입양허가를 입양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제867조 제1항)(김상용, 2019).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⁶⁾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가 제도화될 경우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 입양에 대해 보다 강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시행일 2012.8.5.

6)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양의 비밀과 익명성의 유지를 원하는 친생모들이 입양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Ⅲ.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제도화 노력과 한계

1. 현행 입양특례법상 친족찾기와 문제점

현행 「입양특례법」은 2011년 8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부개정은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었다. 아울러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개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입양특례법」의 정보공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소라미, 2015). 먼저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2012년 시행) 이전 입양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보지 않고 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며 규정 적용에 소극적이다. 둘째, 친부모의 동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자료 공개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입양 알선 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서의 기록 송부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한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 자체가 매우 적다. 넷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개인정보 요청 또는 개인적인 친생부모 찾기에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존재한다. 다섯째, 아동권리보장원, 경찰, 지방자치단

7) 베이비뉴스. 친생모의 프라이버시 vs. 자녀의 알 권리... 대책은?. 2019. 1. 25.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55>

프레스리안. 나는 친부모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17. 8. 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6843&ref=nav_search

체, 입양알선기관 등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친부모와의 연락이 주로 전보나 등기우편 등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적이었다. 다만, 최근에 와서야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찾기와 관련하여 DNA 검사를 통해 해외입양아동의 친생부모를 찾아준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해외입양동포들의 친생부모 찾기에 대한 일정한 시사를 준다고 할 수 있다.⁸⁾

2. 입법개선 노력과 한계

해외입양동포들의 친생부모찾기를 포함한 인권보장,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으로 약칭) 비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한 친생부모 찾기 지원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제17차 국제사법회의에서 문안을 채택하였고, 1995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협약 전문에 나타난 것처럼 국제연합이 1986년 12월 3일 채택한 「국내적·국제적 위탁양육 및 입양에 특별히 관련된,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률적 원칙에 관한 국제연합선언」과 1989년 11월 20일 이를 기초로 채택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다. 2019년 1월 기준 미국, 스웨덴, 중국 등 99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정부 또한 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3년 5월 24일 헤이그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0대 국회에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0대 국회(2020년 4월 30일 현재)에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건,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15건이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들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들이다. 제정안들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국회에서 동의하고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제인권법 수준에서 국제입양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제정법안들이 친족찾기에 관한 규정을

8) 연합뉴스, 길 잃고 미국에 입양된 6살 아이 32년 만에 엄마 품에 안겼다. 2019. 12. 23.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063600053?input=1195m>

9) 이상의 내용은 주로 이지민(2019).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참조.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친생부모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일정하게 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와 협약이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친족찾기 지원 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중앙입양원 설립 등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관여 하에 아동의 입양 적정성과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국제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절차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여러 건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¹⁰⁾ 국내 입양부모들의 반대 등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입양정보공개청구는 여전히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청구 건수 대비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관련 기관의 노력과 한계

구 중앙입양원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에게 한국어 연수와 전통 문화체험 기회 등을 제공해 왔다. 매년 해외입양동포가 한국에 방문하는 수는 약 3,000-5,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세계한인입양인협회 등 해외에서는 현지 입양인과 입양인 가족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마련하는 문화·학술행사나 캠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외입양동포 사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외입양인 초청 포럼’(Overseas Adoptees Forum)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포럼에서는 해외입양동포의 국내정착, 친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등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은 해외입양연대 등과 연계하여 ‘모국으로의 첫 여행’(First Trip Home) 행사를 실시하는데, 이 행사에서는 입양기록이 남아 있는 기관에 방문하거나 DNA 검사와 유전자 등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7년 해외입양동포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1,568건인데 이 중 동의는 279건(17.8%)에 불과하였고 실제 친생부모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90건(5.7%)에 불과한 것으

10) 입양정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9일 주호영 의원, 2016년 11월 29일 김상희 의원, 2017년 1월 31일 남인순 의원, 2019년 10월 31일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들은 20대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중 과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456건, 무응답이나 사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428건,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가 325건, 친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80건 등이었다.¹¹⁾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친족찾기를 진행해 왔던 기관들과 단체들도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4. 소결: DNA 검사 활성화 필요성

해외입양동포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친족찾기를 원하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과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정체성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외입양동포들의 인권 증진에 핵심적 내용이다. 법무부가 작성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도 친족찾기 지원과 한국과의 교류를 수용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과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여러 해외입양 관련 단체들도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 왔다.

해외입양동포의 경우 대부분 헤이그 협약 가입 이전에 입양을 가게 된 경우들로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음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을 찾을 권리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보호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해외입양동포와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국가와 입양단체들이 해외입양동포들의 친족찾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DNA 검사를 통한 친족찾기의 활성화 가능성이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실종아동 찾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친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친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②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유전자 채취·등록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관

11) 세계일보, [입양의 날...갈 길 먼 '뿌리찾기'] 年 수천명 고국 찾지만 친생부모와 상봉 고작 5.7% 그쳐. 2018 5. 10.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0004655?OutUrl=naver>.

심이 증가한 것으로 유전자 확인을 통한 친족찾기가 효율적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 혜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즉, 전후 60여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 약 17만명 가운데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으로 추정되는 약 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과거에는 관계부처의 협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는 첫째, 친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둘째,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²⁾

입양인의 유전자 채취·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향후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IV.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 방안

1. 특별법 제정 방식

해외입양에 관한 법률 정비 노력이 20대 국회에서 진행되었지만, 특히 해외동포 친족찾기를 입법 노력은 성과가 거의 없었다. 특별법 제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의 입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동포 친족찾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둘 수 있는 방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이행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방법,¹³⁾ 현행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째, 헤이그협약 이행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안(「국제입양에

12) 이상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64&call_from=rsslink(2020년 5월 2일 최종검색).

13)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8일 국회에 제안되어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외에 입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하였다.

관한 법률안」이 3건 제출(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되었는데, 정부가 제안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도 동의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들 법안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내용들이 중심이고 해외입양동포들의 친족찾기에 관한 지원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주로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 국가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족찾기 지원에 관한 규정은 두기 어려웠다. 아마도 헤이그협약에 국제입양시 친족찾기를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어 규정하는데 체계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입양특례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제20대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양자 또는 친생부모의 친족찾기에 필요한 지원과 동의를 전제로 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안은 국내 입양가족들의 반대가 제기되었고 결국 철회되었다. 이와같이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사이에 친족찾기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입양 배경과 절차에서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법률에 함께 규율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지만 이 법안들에서 친족찾기를 규정하기에는 체계상 한계가 있었고, 입양특례법에 규정하기에는 국내입양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위험성이 큰 점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족찾기의 경우 해외입양동포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정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입양특례법 2011년 개정 이전의 해외입양동포들에게 우선 적용한다면 입법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은 법체계적 요청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외입양 역사의 특수성과 입양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적 책임에서 찾을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해외입양동포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인체유래물은행 설치와 관련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인체유래물은행 설치에 관해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여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외입양동포의 경우에도 남북 이산가족 확인이나 실종아동찾기와 유사한 절차를 통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다.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은 최근 정부에서 전향적인 지원 결정을 함으로써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종아동 인체유래물은행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회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넓히고 친족찾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입법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 해외입양동포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입양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게 될 경우 국적 회복, 지원받을 권리, 가족과의 재결합권 등을 확인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입양특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입양인이 친생부모 외에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도 친생부모 동의 없이 정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에 대한 공적 개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입양정보 공개기관(피청구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의 송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친족찾기 지원 제도화를 위한 주요 내용

1)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등의 선언

특별법을 제정하게 될 경우 해외입양동포는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이다.¹⁵⁾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는 해외입양동포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이러한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정신을 명확히 하고 해외입양동포의 친생가족에 대한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친생부모를 찾는데 있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외입양동포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주권의 제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로 법률 제정의 목적과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들을 갖게 되는 해외입양인들은 대개 외국 국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권리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14) 외교부 보도자료,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해진다. 2019. 12. 19.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885.

15) 입양특례법 제4조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유추하기 쉽지 않다.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 법은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이전에 해외로 입양된 동포들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들의 알 권리가 당시 법률 규정의 미비, 국가적 책임의 회피 등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후 입양된 해외입양동포들의 경우 전부개정 이후 입양특례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정부의 역할 명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동법에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친족찾기 지원 의무, 실태 조사와 정보관리 의무 등을 규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해외입양동포의 현황 등 실태 조사 및 정보관리,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 및 교류지원 방식의 다양화 방안, 민간차원의 해외입양동포 교류활동 지원, 해외입양동포의 본국에서 정착 및 정체성 함양 지원, 그 밖에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및 교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하도록 규정하면 좋을 것이다.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역할 가운데 해외입양동포의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이 있다. 해외입양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국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관해 특별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적법 개정사항이 된다.

3) 친족찾기 절차의 명확화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 절차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동포가 친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해외 거주인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하되, 해외입양동포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외교부장관은 해외입양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를 경유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등에게 신청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하면 한다.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해외입양동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선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4)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인체유래물은행 설립 근거규정들을

갖고 있는 법률이 실제 친족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국가가 이를 수집하여 보관·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사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입양동포 또는 친생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최상급의 개인정보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은행’¹⁶⁾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은행을 설치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게 하거나 또는 주무부처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기본사실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실태조사와 정보관리는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 마련을 위한 사전단계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외입양동포의 경우 과거의 정보가 적고 그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함께 정보관리에 관한 규율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의 책임은 외교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할 수 있다. 입양에 관

16) 법률 제11250호, 2012. 2. 1.로 개정되기 이전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은행’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했다. 이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서는 ‘인체유래물은행’로 규정하면서 이를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과거의 입양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관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해외입양동포가 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잘 알고 있고 해외공관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외교부장관은 해외입양동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해외입양동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과거 해외입양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관련 입양단체들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에 필요한 정보가 주민등록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입양동포들에 대해 친족찾기 및 국내외 교류를 위한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6) 한국 귀환 및 교류 지원 방안

해외입양동포 지원에는 한국 귀환 또는 교류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친족찾기가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입양동포의 정체성 확립, 자긍심 고취, 세계시민성 함양 등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교류 또는 한국어 교류, 고향 찾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김미숙·김유경·신윤정·안재진·전진아, 2014).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지원은 입양의 사후서비스 차원을 넘어 동포에 대한 정책이다. 정부는 해외입양동포가 한국에 정착하고자 할 때 국적 취득, 체류자격, 거주 및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동포의 친생가족과의 교류 및 가족결합, 권익신장 및 안정적 현지정착, 정체성 정립과 민족적 유대감 형성,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통한 상호 교류 및 연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재단과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들 단체를 통한 지원이 민간 영역과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동포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친족찾기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 보장을 위한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 필요성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친족찾기 제도화의 노력과 한

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외입양동포의 친족찾기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해외입양동포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들과 충돌하지만 양자의 동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친족찾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거 해외로 입양가게 된 경우 중 다수가 타의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특별법에 규정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해외입양동포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선언과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DNA 검사 확대와 인체유래물은행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은 입양 당시 정보만으로 친족찾기를 하는 해외입양동포에게 친족찾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친생부모 역시 유전자정보를 기탁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실종 아동 유전자정보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도 예상된다. 이 밖에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관리, 한국 귀환 및 교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동포들의 친족찾기 지원이 활성화되고 한국과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입양동포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을 예방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혜연(2011). 국제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김유경·신윤정·안재진·전진아(2014).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용(2019).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법철학연구, 22(1), 159-200.
- 김상원·김희진(2019).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65, 57-88.
- 김유경(2011).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73, 1-8.
- 김재민(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충래(2012). 헤이그 입양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과 권리, 16(2), 309-340.
- 보건복지부(2018).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 소라미(2015). 친가족 찾기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방향. 친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55-70.
- _____(2018). 한국에서의 입양제도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32(3), 1-18.
- 안소영(2015). 입양법제의 개선방안 -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주희(2016).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서울법학, 23(3), 91-124.
- 유희량(2015). 해외입양 한인의 정체성 정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은(2017).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선(2001). 해외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민(2019).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흥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2019). 아이들 파는 나라 :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 봄.
- 정기원·김만진(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가은(2019).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 : 근대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우성(2019). 50만 해외입양동포 권리, 국가가 찾아줘야. 한국일보, 2019. 9. 11.

<ABSTRACT>**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Support for
the Search for Relatives of Overseas Adoptees**

Chong, Sangwoo · Lee, Minsol

The studies started with a recognition that a support policy of searching for relatives of overseas adoptees is an important way to promote the adoptees' human rights. Historically, roughly 200,000 children in Korea have been internationally adopted, and at the same time, their birth parents and the country have avoided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and not promoted their human rights. These adoptees had grown up experiencing identity confusion, and for them, human right is about searching for relatives including their birth parents and exchanging with Korea. However, in Korea,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of biological parents is still a priority, so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adoptees are not fully guaranteed, an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finding relatives. In the study, It will seek ways to promote human rights, including finding relatives of overseas adoptees. In order to present concrete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is, the government will examine the reality and normative grounds of finding relatives of overseas adoption compatriots, analyze the progres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ies to support finding relatives, and suggest alternatives. As an alternative, the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gene bank, human material bank, was seen as an important means. In addition, this intended to propose support policies to enhance the human rights,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adoptees to confirm their identity and foster global citizenship.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verseas adoptees through such search for relatives and support for exchanges with their homeland.

Key words

Overseas Adoptees, The Search for Relative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Human Material Bank, Hague Convention

논문 투고일	2020. 04. 20
논문 심사일	2020. 05. 08
게재 확정일	2020. 05. 16

정상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215호
swchong@inha.ac.kr

이민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221호
minsol37@hanmail.net